

審 查 報 告 書

2002. 10. 14
총무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提出日字 : 2002. 10. 4
- 나. 提出者 : 瑞山市長
- 다. 回附日字 : 2002. 10. 8
- 라. 上程日字 : 2002. 10. 14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會計課長 崔春煥)

가. 提案理由

-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 대책에 의거 물품의 불용처분 절차 개선 및 불용물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요조회 방법을 공문서 조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재로 같음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코자 함.

나. 主要骨子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물품,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함(안 제17조제1항).

-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조회시 공문서를 작성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조회를 하였으나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중앙의 표준안에 근거한 것임.
- 주요 검토내용
 - 먼저 제17조제1항은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관한 규정으로 그동안은 불용물품에 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 불용결정을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물품을 비롯한 임·축산물등 까지도 불용결정을 한 후 활용가능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하는 것으로 「소요조회 대상 확대와 절차」를 개선한 것이며
 - 같은조 제4항은 「불용품의 소요조회 방법」을 신설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관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운영상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제안번호	제 9 호
의결년월일	2002. 10. (제 회)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증개정 조례안

제출자	서산시장
제출년월일	2002. 10. 4.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증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9
----------	---

제출년월일 : 2002. 10. 4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 이유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 대책에 의거 물품의 불용처분 절차 개선 및 불용물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요조회 방법을 공문서 조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재로 같음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 골자

- 가.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물품,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하도록 개정하고(안 제17조 제1항)
- 나.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조회 시 공문서를 작성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조회를 하였으나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같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4항)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물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p> <p>① <u>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 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u></p> <p>1. ~ 8.(생략) ② ~ ③(생략)</p> <p><u><신 설></u></p>	<p>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p> <p>① <u>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u></p> <p>1. ~ 8.(현행과 같음) ② ~ ③(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 할 수 있다.</u></p>

물품관리법 발취 현황

□ 물품관리법 제35조(불용의 결정등)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9조(불용결정의 기준등)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 ①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52조(불용결정의 통보)

- ① 영 제39조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한다.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활용가능품의 처리)

- ① 조달청장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각 중앙관서에 당해 물품의 소요여부를 조회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내용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수리비 지출한계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소요기관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 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사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금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전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로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 가격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입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을 요하는 물품



충남 심벌마크

충청남도



충남 마스코트(귀도리)

우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 전화 (042) 251-2332 / 전송 251-2339
총무과 과장 조현행 용도담당 황수철 담당자 오경균 kgo707@www.chungnam.net

문서번호 총무 13330 - 1783

시행일자 2002. 8. 10.

(경 유)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선 람	소장	조현행	지 시		
접 수	일자	2002. 8. 10	결 계 · 공 람	대 응	부 등
	번호	14652			
처 리 과			담 당 자	담 당 자	오경균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 이첩시달

원근과제함니다.

1. 행정자치부 공기13330-493(2002. 8. 0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2002. 5. 1부터 6. 30까지 실시한 정기재물조사를 분석한 결과 물품의 장부 미등재와 불용대상 물품의 미처분 등 물품관리상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3.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재물조정과 불용처분, 조례개정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 1부. 끝.

충청남도지



수 신 처 : 너01, 더01-15, 러01, 머01, 머17, 머19, 머38, 버01, 버08, 버11, 버13, 버14, 버15, 버19, 버20, 버21.



2002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

충 청 남 도

5. 물품관리조례개정 추진

가. 개정사유

○ 불용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나. 개정내용

(1) 물품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 8.(생략) ②·③(생략) <신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1. ~ 8.(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개	정

(2) 조례개정 조치

○ 개정준칙 : 별표 1

○ 개정공포 : 2002.12.31까지

○ 관련조치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정 조치

<별표 1>

○○시·도, 시·군·자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

○○시·도, 시·군·자치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 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p> <p>1. ~ 8.(생략)</p> <p>② ~ ③(생략)</p> <p><u><신설></u></p>	<p>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p> <p>1. ~ 8.(현행과 같음)</p> <p>② ~ ③(현행과 같음)</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p>